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보 도 자 료	작성과	국민참여과
	2019년 2월 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윤선영 사무관 손우정
		연락처	02-2100-1427 02-2100-1428

위원회,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보급, 미래세대 위한 사업 등 추진 합의 -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 이하 ‘위원회’)는 2월 1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1운동 100주년 관련 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원회는 교육청과 함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교육현장에서 계승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공동으로 기획·추진하게 된다.
- 협약 내용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공동 교육활동,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사업,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 등 100주년 교육자료 보급, 기타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협력 진행 등이다.
- 특히 위원회와 교육청은 위원회가 제작한 독립선언서를 함께 읽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언문을 작성하는 사업 등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 붙임

- 위원회-교육청 협약서

* 협약식 사진은 '19.2.1.(금) 16:00 협약체결 후 제공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가치 계승을 위한

협약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전파하기 위한 교육활동(이하 “100주년 기념 교육활동”이라 한다) 지원을 위해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위원회와 교육청이 100주년 기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제3조(상호협력 분야)

위원회와 교육청은 다음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100주년 가치 계승을 위한 공동 교육활동
2.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 사업
3.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등 100주년 교육자료 보급
4. 기타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교류 협력 등

제4조(상호협조)

1. 위원회와 교육청은 100주년 기념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그 의미와 가치가 계승·전파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2. 협약에 명시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와 교육청 실무부서를 통해 상호 협조하고 조정한다.

제5조(협약효력)

본 협약은 위원회와 교육청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기간은 100주년 기념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 인하고 위원회와 교육청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2월 1일



위원장 한 완 상

교육감 이 재 정
